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방안*

오 선 영**

차 례

- I. 서 론
- II.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역할 및 운영 유형
- III.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각 국가기관과의 연계방안
- IV. 결 론

[국문초록]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가운데, 당 의정서의 성공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센터 이외에, 국내에서 운영될 정보 허브 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 허브 센터를 담당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센터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운영유형 장·단점을 비교함과 동시에, 해외 사례들을 통해 본 센터의 바람직한 운영 유형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통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수의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국가연락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의 편의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정보제공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행정 비용의 증대될 수 있다. 그래서 정보 공유라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단독의 부처가 관리하는 통합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여러 부처들 간의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협의회 등을

* 이 논문은 국립생물자원관 2016년 연구용역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관리 연구’ 중 필자가 담당할 부분을 기초로 금년 1월에 제정 공포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활용하여 통합형의 단점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다른 국가기관의 고유 권한을 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하여야 한다. 본 센터에서 유전자원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이용자들의 절차 준수 신고에 대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 제공이라는 역할은 국가연락기관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으로서, 국가연락기관 중의 하나인 환경부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운영을 맡도록 되어 있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I. 서론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공식 발효됨에 따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여겨지던 생물자원들에 대한 국가주권이 강화되었다. 나고야의정서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타 국가의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려는 자는, 유전자원 제공국에게 사전통보 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미리 발급받고 유전자원 이용 후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계약서 성격의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을 제공국(자)과 체결하여야 한다.

현재 2017년 2월 기준으로 총 89개의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¹⁾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에 당 의정서를 비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자국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²⁾ 이에 우리나라 정부 역시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2017년 1월 17일 제정·공포하여 당 의정서의 국내 비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³⁾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당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유전자원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 개인, 연구자들은 나고야

1)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https://absch.cbd.int/>

2) 중국은 2016년 9월 6일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중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https://absch.cbd.int/countries/CN>

3)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33호, 2017년 1월 17일 제정, [시행미정].

의정서의 핵심 의무 사항인 해외의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여전히 취하기 쉽지 아니하며, 국내의 관련 부처 역시 분산되어 있어, 각 부처에 산재된 정보들에 대한 관리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이용자가 우리나라 국내의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필수 요건인 국내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정보 공유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모색하고, 이러한 정보공유 체계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의 연구 대상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센터(Clearing-House)와는 별개로, 국내에서 운영될 정보 허브 체계를 의미한다. 더욱이 지난 달 공포된 유전자원법 제17조에서 정보 허브 역할을 담당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 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필요성 및 역할을 재검토하여, 바람직한 운영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국가연락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II.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역할 및 운영 유형

1.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구축 필요성 및 역할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와 정보 공유를 언급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제14조에서 관련 정보들 간의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정보공유센터(ABS-CH)가 CBD 사무국에 설치되었다.⁴⁾ 우리나라 역시 관련 정보들의 허브 역할

4) 나고야의정서 제14조 1항: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가 이 문서에 의거하여 협약 제18조제 3항에 따른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설치된다. 이 체계는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 체계는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을 담당할 체계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⁵⁾ 나고야의정서 본문자체에서는 당사국에게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국가연락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의 정보공유 또는 허브센터의 설치에 강제하고 있지 아니다. 그러나 당 의정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국내외 정보 교류가 필수적이기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구축은 유전자원 이용자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⁶⁾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정보 허브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현재 20개의 당사국이 자국의 정보 허브센터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유센터(ABS-CH)에 공개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실로 크다.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국가연락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도 다른데다가, 복수의 기관이 하나의 국가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접근이나 이용 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정보제공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부처 간의 업무가 중첩되어 행정 비용이 과도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설치 및 운영비용의 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들은 정보공유센터(ABS-CH)에 자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기에,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연락

5) 유전자원법 제17조: ① 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센터(이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2. 의정서 제14조에 따른 접근 및 이익 공유정보공유체계에 대한 국내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권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현재 20개의 당사국이 자국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CBD 사무국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센터(ABS CH)에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자국어와 영어 등을 혼용하여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https://absch.cbd.int/search/nationalRecords?schema=database>

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 허브센터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제공 및 공유라는 허브 역할 이외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각 국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지원 업무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국가연락기관과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분명히 구분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⁷⁾ 우선적으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가연락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복수의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이 존재하여, 접근신고 및 이행준수 신고제도와 관련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⁸⁾ 각 부처와의 연계 방안은 후술하기로 한다.

이로써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허브로서 내외국인이 쉽게 접근하여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역할과 함께,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국가연락기관과의 기능 및 역할들을 지원하여 나고야의정서의 성공적인 이행을 이끌어야 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2.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내의 정보제공의 범위

유전자원법 제17조에 따라 본 센터에서 취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제공하게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국내의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CBD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정보공유센터(ABS-CH)에 제출할 국내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그리고 각 국가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유전자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보 등이다. 현재 시행령은 제정되지 아니하였으

7) 국가연락기관의 주된 업무는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런 정보의 주된 이용자는 외국인이다. 반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의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 유전자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에, 주된 이용자는 내국인이라고 할 수 있다.

8)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관련 국가들이 단일의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며, 우리나라의 예처럼 5개의 국가책임기관, 6개의 점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는 매우 드물다.

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 관련 정보들이다. 유전자원법 제6조에서도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각 관련 기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보는 동 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교류되어야 한다. 현재 각 부처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기업컨설팅이나 help desk 관련 정보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둘째, 정보 공개 및 교류에 따른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비밀 정보, 개인정보 관련 보호를 포함하여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유전자원법 제19조에서 관련 국가기관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장은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보호되는 정보 유형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적인 정보 역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공유되어야 한다.

3.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운영 유형

유전자원법 제17조에 따르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주체는 환경부이다. 그동안 운영주체 선정에 대해서는 각 부처간의 의견 대립이 있어 왔다. 그러나 국가연락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아래 해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연락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가 국내 정보센터를 운영하거나, 이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환경부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운영주체가 정해졌다고 하여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이 부처 간 통합형인지 분산형 인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즉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합형인 단독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복수의 기관으로 센터를 분산하여 운영하는 유형으로 구축할 것인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단독의 기관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 편의성이 개선되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조직 구축 및 운영비용이 절감되는 점과 함께,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정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처 간의 역할 중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⁹⁾ 그러나 본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타 부처 간의 협력을 제고하기는 쉽지 아니할 것이다. 반면 분산형인 경우에는, 각 부처에서 정보제공 센터를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고 부처 내부에서의 조직 설치 및 내부 거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¹⁰⁾ 그러나 정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의 편의성이 매우 떨어지며, 부처 간의 업무 중첩성이 많아 부처 간의 거래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¹¹⁾ 나아가 복수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에는 국가 예산 역시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상의 각 유형별 장단점들을 고려해 보면, 결국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주된 업무는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가장 용이한 통합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통합된 정보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종합하여 보면, 통합형은 국가정책의 조율과 갈등조정이 매우 용이해지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접근 편의성이 개선되는 측면으로 인하여 소망성이 매우 높고, 부처 간 업무의 중첩가능성과 부처할거주의를 배제할 수 있다.¹²⁾ 이에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비교적 낫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4.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의 해외 사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에서의 사례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20개의 국가들이 자국 내의 정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정보 센터를 살펴보았다. 다만 다른 국가들 역시, 유전자원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점으로 그들의 구체적인 운영시스템을 면밀하게 살펴보는데에는

9)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전통보승인(PIC) 국내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국립생물자원관, 2015년, 30-32면.

10) *Id.*

11) *Id.* 33-35면.

12) *Id.* 30-35면.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1) 독일

독일은 2016년 7월 20일에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었으며,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 센터의 명칭은 ‘German ABS Information Platform’이다.¹³⁾ 국가책임기관인 ‘Federal Agency for Natural Conservation(BfN)’에서 본 정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국립연구기관으로서 독일 환경부(German Environment Ministry)에 소속되어 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본 정보 센터는 자국어인 독일어와 영어 버전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

본 센터에서는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in Germany)에 대한 정보 외에도 해외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in Other Countrie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내국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의 국내 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관행(best practices),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 declarations), 수집(collection)에 관한 서식(form)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독일은 주요 이용국 중의 하나로 독일의 정보 센터의 운영체제는 우리나라 유전자원정보관리 센터의 구축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스위스

스위스는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었으며, 스위스의 정보 센터의 명칭은 ‘Swiss Information System Biodiversity (SIB)’이다.¹⁴⁾ 본 센터는 중앙행정기관인 특정 부처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보공유관리 체제(Clearing-House Mechanism)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정보 센터 역시 다양한 정보들을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와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스위스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과 관련하여 신고절차 및 관련 국내 법률(Federal Act on the Protection of Nature and Cultural Heritage (NCHA))을 소개하고 있다.

¹³⁾ http://www.bfn.de/index_abs.html

¹⁴⁾ <http://www.sib.admin.ch>

3) 중국

중국은 2016년 6월 8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90일이 경과하는 9월 6일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공식 당사국이 되었다. 중국이 공개한 정보 센터는 ‘생물유전자원 획득과 이익공유 정보교환소(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信息交换所)’이며, 환경보호부 환경보호 대외협력센터(环境保护部环境保护对外合作中心)에서 운영하고 있다.¹⁵⁾ 중국의 정보 센터는 아직 초기 단계 운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법령이나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지 아니하다.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보호부 자연생태보호사 생물처(环境保护部自然生态保护司生物处)가 지정되어 있는 정보는 공개하고 있으나, 국가책임기관 내지 국가점검기관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에 관한 등록가이드 등 상세한 사항은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검토 의견

전술하였듯이, CBD 사무국에 국내 정보 센터를 소개한 국가는 20개로, 이 중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18개국이고, 비준국은 2개국이다.¹⁶⁾ 공개된 각 국의 정보 센터들을 살펴보면 그 운영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대체로 단일의 정보 센터를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가연락기관(대부분 환경부)에서 자국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국어와 함께 영어 버전을 제공하고 있어 해외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유전자원 제공국들은 대체로 자국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와 관련된 정보와 함께 관련 법률 소개를 하고 있으며, 주요 이용국 중의 하나인 독일인 경우에는 자국민이 해외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정보 센터의 운영체제는 우리나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운영에도 중요한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단일 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

¹⁵⁾ <http://www.mepfeco.org.cn/lxwm/>

¹⁶⁾ 당사국은 벨라루스, 벨기에, 부룬디,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과테말라, 온두라스, 케냐, 헝가리, 마다가스카르, 네덜란드, 페루, 남아공, 스위스, 우간다, 스웨덴이며, 비준국은 오스트리아와 모로코가 있다.

하는 것이 정보 접근의 편의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나아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인 경우, 국가연락기관과의 업무 중첩과 국가책임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위하여 환경부가 맡도록 한 결정은 바람직하다.

Ⅲ.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각 국가기관과의 연계방안

이미 언급한대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주된 역할은 정보 제공이다. 이러한 정보들에는 관련 국가기관에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로 제공 되어지는 정보들이 포함되므로, 각 기관과의 연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국가연락기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지원하여 나고야의정서의 성공적인 국내 이행을 도와야 한다. 따라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각 국가기관과의 연계방안을 구상하는 것은 본 센터의 운영방안을 구상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국가책임기관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권한, 접근 요건 충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해당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한다.¹⁷⁾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부처별로 소관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책임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¹⁸⁾

17) 나고야의정서 제13조 2항: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해당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 허가를 부여하거나, 적절한 경우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고,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해당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자문할 책임을 부담한다.

18) 유전자원법 제8조 1항. 미래창조과학부는 생명연구자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명생명자원, 보건복지부는 병원체자원, 환경부는 야생 생물자원 및 기타 생물자원, 해양수산부는 해양 및 수산 생명자원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상의 사전통보승인에 해당하는 접근 허가 여부를 ‘신고’ 제도로 한다.¹⁹⁾ 우리나라 국내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은 신고를 하기 이전에 먼저 동 유전자원을 관할하는 국가책임기관부터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국가연락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다만 국가책임기관들에 따라 다양한 신고절차 및 체계가 구축되는 경우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접근 신고 및 승인 발급 지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접근승인 신고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한 신고접수 창고 단일화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접근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신청 접수된 신고의 수락 여부는 5개의 국가책임기관에서 진행하고, 신고 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또 하나의 창구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접근 신고체계의 통합 관리 유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즉 유전자원 이용자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접근 신고를 하면, 당 센터에서 해당 유전자원을 소관하는 관련 부처에 이에 대한 접근 신고 신청을 전달하여, 해당 국가책임기관은 접근 신고 신청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전달 후, 이를 전달 받은 센터는 이를 이용자에게 최종 통보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국내 유전자원 접근신고 접수창구 단일화 및 접근신고 단계



* 그림은 저자가 그려넣었음

접수창구의 단일화 예시는 관세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싱글 윈도우 시스템(Single Window System)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세청은 통관관련 업무를 단일창구에서 일괄

¹⁹⁾ 유전자원법 제9조 내국인인 경우에는 따로 신고 의무가 없으나, 유전자원 제공국이 대한민국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인 싱글 윈도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출입업체가 세관에서의 수출입신고와는 별도로 각종 특별법에 의한 요건확인을 위하여 수출입시 여러 기관을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고만으로 민원처리를 가능토록 한 통합민원시스템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수입신고와 요건확인 신청창구의 다원화로 인한 자료의 중복입력 및 중복전송으로 인해, 무역업체 및 관세사무소들의 업무 비효율성과 비용부담이 발생하였다. 이에 수입신고(관세청에서 처리)와 다양한 요건확인 신청(요건확인 기관에서 처리)을 하나의 창구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²⁰⁾ 이로써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²¹⁾ 통하여 요건확인신청과 수출입신고를 하나의 창구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관세청의 싱글 윈도우 시스템을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에 대한 신고의 접수창구를 단일화 한다면 국내외 이용자들의 편의는 더욱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유전자원 접근 신고는 단 하나의 국가책임기관에서 받게 되는 것이어서 통관업무와는 달리 접근 신고에 대한 단일 창구의 필요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잡한 절차(가령, 관련 책임기관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국가연락기관을 통해 정보를 입수 후 접근 신고 절차 개시)를 간소화하고, 신고 절차의 복잡함(가령, 국가책임기관별 상이한 신고 절차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을 단순화함과 동시에 여러 부대비용의 감소를 위하여 관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싱글 윈도우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크다.

만약 이용자가 접근 신고의 창구가 단일화 되었다는 것을 국가연락기관이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경우, 접근신고인이 국가책임기관에 직접 접근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접근신고를 받은 국가책임기관이 신고인에게 정보관리센터로 접수하도록 반려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책임기관이 직접 정보관리센터에 보낸 후 다시 관련 서류를 받아

20) 김태인 및 박수영,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UNI-PASS와 통관단일창구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9권 제4호, 2008, 74면.

21)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 네임으로 세계 최초로 100% 전자 수출입통관, 화물관리, 징수 및 관세환급, 통계정보, 통관단일창구(S/W)시스템으로 구성된 일괄처리(One-Stop) 전자통관포털시스템임

처리할 것인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전자와 같은 처리는 이용자에게 권유할 수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후자와 같이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책임기관이 접근신고를 접수한 경우 해당 신고가 자동으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전달되는 체계까지 구축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접근 신고의 접수창구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로 단일화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경우, 다음 두 가지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접근 신고의 접수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접수 및 신고 수리는 국가책임기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유전자원법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갖는 접근신고의 접수 및 수리 여부의 통지에 관한 업무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²²⁾ 둘째,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신고 접수 시 본 센터가 할 수 있는 심사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접수창구에 접수되는 즉시 관련 국가책임기관으로 접근신고를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접근신고의 형식은 갖추었는지 등의 형식적 심사를 하고 국가책임기관으로 보낼 것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유전자원 접근신고의 심사는 국가책임기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가 법적인 심사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신청자가 접근신고의 형식적 절차 및 내용은 갖췄는지, 또는 신고 간소화 절차에 따르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등의 간단한 사전 검토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진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진다. 또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가 접수창구에서 신고 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돕는 것도 구상해 볼 수 있다.

2.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국가점검기관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은 해외의 유전자원 등을 이용하는 자의 사전통

²²⁾ 유전자원법 제23조: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 여부를 점검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인 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를 당사국에게 제공하는 등의 의무를 담당한다.²³⁾ 이에 따라 해외의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상기 정보들을 국가점검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5개의 국가책임기관, 즉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어 총 6개의 부처가 점검기관을 맡는다.²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위 6개의 국가점검기관은 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PIC과 MAT 등)의 준수 확인, 이행준수 신고의 접수, 필요 시 이행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해외 유전자원 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 등을 담당한다.²⁵⁾

이와 같이 국가점검기관이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내국인을 포함한 국내 이용자는 유전자원 제공국의 절차 준수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관계 부처에 대한 혼동이 야기되어 절차 준수 신고가 지체될 수 있다. 각 국가점검기관마다 절차준수 신고 사항 및 절차가 통일화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인 이용자의 불편함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에 절차 준수와 관련된 정보(가령, 어느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등)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제공하여 주면 국내 이용자의 절차 준수 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절차 준수 신고의 경우에는 점검기관의 수락이 따로 요구되지 않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가 관련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23) 나고야의정서 제17조 1항: 의무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다음 각 목에 따라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을 지정한다 ... (이하 생략)

24) 유전자원법 제13조 1항: 의정서 제17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창조과학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산업통상자원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4.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5.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물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25) 유전자원법 제13조 2항: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처리 2.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조사 및 권고 3.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고하기만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접근 신고의 접수창구 단일화 방향은 굳이 필요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볼 때, 유전자원 접근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준수 관련 신고를 접수 받고 유전자원 정보관리센터가 해당 부처로 전달하여 신고를 접수하게 하는 방법도 바람직할 수 있다. 나아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가 이행준수 관련 해외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은 국내 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이로써 양 기관은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가 구축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검검기관의 장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게 절차 준수 신고(제15조), 절차 준수와 관련된 조사 및 권고 사항(제16조)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²⁶⁾ 국가검검기관이 정보를 먼저 제출하기 이전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가 필요 정보를 먼저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²⁷⁾

3.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국가연락기관

국가연락기관은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된 제반 정보, 접근 대상 유전자원을 담당하는 국가책임기관에 대한 정보 및 관련 국가기관 및 토착지역공동체(ILC) 등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CBD 사무국과의 연락을 맡고 있다.²⁸⁾ 현재 우리나라는 외교부와 환경부가 국가

26) 유전자원법 제17조 3항: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검검기관의 장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권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7)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앞의 책, 35면.

28) 나고야의정서 제13조 1항 및 4항: 1.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가연락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국가연락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청자의 경우, 사전통보승인 취득과 상호합의조건(이익 공유를 포함) 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 나. 가능할 경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신청자의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취득 또는, 적절한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승인과 참여에 관한 절차, 그리고 이익 공유를 포함하여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정보, 그리고 다. 국가책임기관, 관련 토착지역공동체,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보, 4. 각 당사국은 늦어도 이 의정서의 발효일까지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의 연락처를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국이 두 개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할 경우 해당 기관들이 각각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정보에는 최소한 접근 신청 유전자원에 대한 책임기관을

연락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외교부는 CBD 사무국과의 연락 업무를 맡고 환경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²⁹⁾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가연락기관의 업무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나, 두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은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연락기관은 국내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정보 제공 범위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연락기관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내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내국인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전술하였듯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주된 이용자는 내·외국인 모두이므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정보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국내의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허브여야 한다.

다만,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제반 내용(가령, PIC 또는 MAT 과 관련된 사항, ABS와 관련된 입법적, 행정적 조치, 국가책임기관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국가연락기관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므로, 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이한 정보 전달의 오류를 막기 위하여 두 기관은 양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력관계 제고 및 효율적인 업무의 연계를 위하여 국가연락기관의 장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지도·감독·운영하는 등 이를 관리하여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환경부장관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³⁰⁾ 이 두 기관의 연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명시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국가연락기관 지정이나 연락처 또는 국가책임기관(들)의 책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29) 유전자원법 제7조: 나고야의정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이하 “국가연락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과의 연락 2. 환경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제공

30) 유전자원법 제17조 1항: 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센터(이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각 국가기관과의 연계 제고 방안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각 국가기관과의 개별 연계방안은 이미 전술하였다. 다만, 네 개의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긴밀한 협력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나고야의정서의 효율적인 국내 이행을 돕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다.³¹⁾ 여러 부처로 분산된 복수의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불필요한 접근 신고 절차의 지연을 막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역할의 중요함은 이미 강조하였다. 이러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내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협의회는 부처별로 중복 또는 모순되는 상황에 대한 협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에도 사법적 구제수단 이전에 문제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의 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또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의 통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행히 유전자원법에서 환경부장관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운영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³²⁾

두 번째 방안으로, 관계 부처 간의 시의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 및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장이 해당 부처에게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정보제공의 능동적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³³⁾ 현재 유전자원법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

31) 한국환경법학회, 『나고야의정서 이행방안 구체화를 위한 연구』, 국립생물자원관, 2015, 34-36면.

32) 유전자원법 제18조 1항: 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33) 한국환경법학회, 앞의 책, 35면.

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이 기관이 전달하여 주는 정보를 수동적으로만 취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기존 정보를 최신 정보로의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경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장은 해당 부처에게 필요 정보를 먼저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이 강화되는 가운데, 개별 국가 내에서의 당 의정서 이행을 위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유전자원 부국들은 이미 자국의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체제 대응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유전자원 이용국들은 당 의정서의 목적 및 정신을 해하지 아니하면서도 자국민들의 편익을 돕는 방향으로 당 의정서 비준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공적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인식제고, 관련 부처 간의 협력, 능력 배양 등 많은 요소들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 간에는 그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정보 공유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국내 센터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역할 및 운영유형과 다른 국가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통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국내의 정보들의 공유 허브 센터의 역할과 함께 타 국가기관의 고유 업무의 지원 역할을 통해 나고야의정서의 성공적인 국내 이행을 돕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수의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국가연락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의 편의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정보제공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행정 비용의 증대로 인해 정보 공유 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고유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독의 부처가 관리하는 통합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환경부 장관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운영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환경부 내에서 본 센터의 운영을 도맡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여러 부처들 간의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통합형의 단점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다른 국가기관의 고유 권한을 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하여야 하는데, 국가책임기관과의 연계를 위하여 본 센터가 유전자원 접근 신고의 창구 역할을 대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내에 접근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본 센터에서 접근 신청 접수를 받으면, 이를 관련 국가책임기관에게 전달하고, 전달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에서 접근 신고 수락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신청 결과를 다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로 보내고, 본 센터는 접근 신고 신청자에게 이 결과를 최종 통보하여주면 된다. 이러한 접근 신고 창구 단일화 방안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창구 단일화는 절차 준수 신고 때에도 마찬가지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이는 국가점검기관과 연계되는 것으로, 이용자가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이행 준수 사항들을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창구를 통해 전달하고, 본 센터는 이를 국가점검기관에 전달하면 된다. 이때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점검기관이 신고 결과를 따로 공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정보제공이라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연락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다행히 환경부 장관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운영을 맡기로 하여, 두 기관의 협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 부처가 소관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유전자원정보관리체계와 본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연계 방안을 구상하는 것 역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 범위의 한계로 인하여, 후속 연구로 남기기로 한다.

참고문헌

- 김태인 및 곽수영,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UNI-PASS와
통관단일창구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9권 제4호, 2008.
- 박종원,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환경법연구」,
제37권 제1호, 2015.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전통보승인(PIC) 국내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국립
생물자원관, 2015.
- 한국환경법학회, 『나고야의정서 이행방안 구체화를 위한 연구』, 국립생물자원관,
2015.
- 나고야의정서 조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33호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https://absch.cbd.int/> (최종방문일 2017.2.25)
- 독일 정보 공유 센터 http://www.bfn.de/index_abs.html (최종방문일 2017.02.13.)
스위스 정보 공유 센터 <http://www.sib.admin.ch> (최종방문일 2017. 02.01)
중국 정보 공유 센터 <http://www.mepfeco.org.cn/lxwm/> (최종방문일 2017. 02. 01)

[Abstract]

Strategies for an Operational Framework of the ABS National Clearing-House for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Oh, Sun Young

(Assistant Professor at Soongsil University)

The Nagoya Protocol's success will require effective implementation at the domestic level. And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strengthen the correct information delivery system and its sharing is indeed necessary. Besides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Clearing-House operated by CBD Secretariat, thus, establishment of National Clearing-House(NCH) is needed to share correct information, such as domestic regulatory ABS requirements or information on other countries' ABS rules and policies. This article suggests the ideas how to operate the NCH successfully by reexamining the roles of the NCH and comparing the leading cases of other countries. Furthermore, this article recommends the ways how to harmonize between the NCH and other national agencies, such as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National Focal Points and National Checkpoints. A single rather than a plural NCH system and its services provide users greater convenience by tightly integrating the ABS requirements and information. As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are multiple regarding the Nagoya Protocol, the establishment of a committee made by experts from these ministries would be effective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and stakeholders. The single window system operated by the NCH to receive the application of both access and compliance notification requirement also provide a platform for facilitating the connection between related ministries.

주 제 어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접근 신고, 국가책임기관, 국가연락기관, 정보 허브 센터

Key Words Nagoya Protocol, National Clearing House,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National Focal Point, National Checkpoint, Information Herb Center